##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82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 : 남인순 • 민병덕 • 이병진

김 윤・김남희・강훈식

한준호 • 서영석 • 박상혁

이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과다한 음주"를 "음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 다한 음주"를 "음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	
흡연과 <u>과다한 음주</u> 가 국민건	<u>음주</u>
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	
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b>4</b>
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	
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	
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	
기에 <u>과다한 음주</u> 는 건강에 해	<u>승</u> 구
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u>.</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